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FX Global Code)

목차

서문 (Foreword)
 I. 글로벌 규범이란?
 II. 글로벌 규범의 적용대상은?

윤리 (Ethics)

지배구조 (Governance)

거래실행 (Execution)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I. 기밀정보의 취급
 II. 의사소통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I. 위험관리, 준법감시 및 검토 체계
 II. 주요 위험 형태

거래확인 및 결제 (Confirmation and Settlement)

 I. 전반적 원칙
 II. 거래확인 절차
 III. 상계 및 결제 절차
 IV. 계정 대사 절차

부록 1 : 사례
부록 2 : 용어 해설
부록 3 : 이행선언서

서문(Foreword)

I. 글로벌 규범이란?

외환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관행(good practice)에 관한 국제 원칙(이하 “글로벌 규범”)은 기관간(wholesale) 외환시장(이하 “외환시장”)의 청렴성(integrity) 및 효과적인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¹⁾ 본 규범의 목적은, 외환시장을 보다 견고하고, 공정하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경쟁을 통해 도출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용인되는 행동기준 하에서 확신을 갖고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규범은 시장참가자들에게 법률 또는 규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규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인 모범 관행과 절차를 제시하여 각 지역의 법률, 규칙, 규제 등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범은 전 세계 16개 지역(jurisdictions)의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들 간의 협력하에 마련되었다.

- 중앙은행의 차원에서는, 2015년 7월 글로벌 규범의 초안 작성과 그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실무그룹(Foreign Exchange Working Group, FXWG)이 설립되었다. 외환시장 실무그룹은 주요 통화 권역을 대표하는 21개 중앙은행의 시장운영 담당 고위급 임원으로 구성된 BIS 시장위원회(Market Committee, MC)의 산하 기관으로서, Guy Debelle(호주 중앙은행 부총재)이 의장을 담당하였다.
- 민간영역에서는,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외환시장 실무그룹이 CLS은행의 CEO인 David Puth를 의장으로 한 시장참가자그룹(Markets Participants Group, MPG)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지역의 외환시장협의회(Foreign exchange committees, FXCs) 및 외환시장 대표자들의 의견이 조율되어 규범에 반영되었다.

본 규범은 다양한 단체의 협조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외환시장 실무그룹(FXWG)과 시장참가자그룹(MPG)은 수차례 초안을 다듬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실무그룹 회원 중앙은행들이 후원하는 지역내 외환시장협의회 관계자들 및 일부 산업종사자들도부터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1) 각국의 외환시장협의회(FXCs)와 중앙은행은 해당 외환시장의 환경에 적합한 지역내 기준을 계속 발표할 수 있다.

글로벌 규범은 6개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윤리(Ethics):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공정성 및 청렴성(fairness and 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적이며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지배구조(Governanc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활동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외환시장 참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거래실행(Execution):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을 보다 견고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거래의 협상과 실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강건성(robust), 공정성, 개방성, 유동성,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효과적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보호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위험에 대한 파악, 관리 그리고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전한(robust) 통제 및 준법감시 환경을 도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거래확인 및 결제 절차(Confirmation and Settlement Processes):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에서의 결제가 예측가능하고 적시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견고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후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은 향후 현재와 유사한 협력적인 방식 하에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될 것이다.

글로벌 규범과 적용법규(Applicable Law)

시장참가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업무를 영위하는 각 지역의 외환시장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제(이하 “적용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적용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 정책 및 절차(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를 갖출 책임이 있다.

본 규범의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용법규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규범은 해당 시장이나 시장참가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규제 및 감독당국이나 여타 공적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본 규범은 적용법규 위반에 대해 어떠한 법적 방어수단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 규범은 시장참가자들이 외환시장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내부절차를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기준(reference)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본 규범이 외환시장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은 아님을 밝힌다.

본 규범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들은 어느 지역의 적용법규 하에서는 특정(specific)한 정의를 갖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규범은 전 세계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법적 용어가 본 규범 해석에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혼선을 막기 위해 밝히자면, 본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외환시장 실무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로 읽혀져야 하며 특정한 법적 또는 규제적 의미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 해설은 부록 2에 있다.

II. 글로벌 규범의 적용대상은?

외환시장은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이 여러 외환상품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규범은 이러한 외환시장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sell-side 및 buy-side 업체, 비은행 유동성 공급업체, 전자거래 플랫폼(E-Trading Platforms) 운영업체, 중개, 거래실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다. 외환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one size fits all)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법을 찾기는 어렵겠으나 본 규범은 책임 있는 시장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적인 지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규범의 목적상 시장참가자²⁾는 다음의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조직(법적 형태와는 무관)으로 정의한다.

- (i) 외환의 매매, 또는 (하나 또는 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거래* 등 외환시장 참여를 일상 업무로 하는 경우

* 현물인도거래(deliverable) 및 차액결제거래(non-deliverable), 직접거래 및 간접거래 모두 포함

2) 시장참가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직원 모두를 지칭하나 때로는 성격상 둘 중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원칙은 개인보다는 주로 기업단위의 정책과 절차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본 규범에서는 상황에 따라 “기업”이나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 대상을 명백히 하였다.

- (ii) 시장참가자들이 (i)에서 기술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시스템, 플랫폼 또는 조직을 운영
- (iii) FX 벤치마크 거래실행 서비스를 제공
- (iv) 단, 각 지역의 소매 외환시장참가자(retail market participant)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시장참가자를 위하여 앞서 기술한 사항들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시장참가자에 포함된다.

아래에 열거된 종류의 개인 또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위의 (i)~(iv)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외환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시장참가자로 간주할 수 있다.

- 금융기관
- 중앙은행, 다만 법적 의무 또는 정책기능의 수행과 배치되는 경우 제외³⁾
- 준국가기관(quasi-sovereigns) 및 국제기구, 다만 기관의 정책 의무 수행과 배치되는 경우 제외
- 자산운용사, 국부펀드, 헤지펀드, 연기금 및 보험사
- 기업재무부서(Corporate treasury departments) 또는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그룹내 모기업, 자회사, 지점, 계열사 또는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대신하여 그룹 외부와 거래하는 기업재무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s)
- 재무기능을 수행하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s running treasury operations)
- 벤치마크 거래실행 제공업체
- 비은행 유동성 공급자, 고빈도거래 전략 등 자동화된 거래전략을 수행하거나 알고리즘 거래실행을 제공하는 기업들
- 중개인(소매 외환중개인 포함), 투자자문사,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및 이와 유사한 중개인/대리인
- 기관간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송금업자 및 환전상
- 전자거래플랫폼

3) 중앙은행이 법적 의무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는 중앙은행 자신 혹은 중앙은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거래확인 및 결제 플랫폼
- 각 해당지역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로 분류되는 조직

일반적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종류의 개인 또는 조직은 위의 (i)~(iv)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외환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시장참가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호가정보제공 플랫폼
- 소매(retail) 고객과 거래하는 송금업자 및 환전상
- 개인적으로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거래하는 프라이빗뱅킹 고객
- 일반 소매(retail) 고객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환시장에의 참여 형태 및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규범은 이러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참가자 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시행 시, 서로 다른 시장참가자들이 각자의 외환시장 활동을 글로벌 행동규범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활동의 규모, 복잡성 및 성격 등을 반드시 반영하고, 적용법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장참가자들은 본 규범의 시행 및 반영을 위해, 내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검토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 규범에는 "이행선언서(Statement of Commitment)"(부록 3)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동 이행선언서는 글로벌 규범과 같이 자발적인 것이며, 시장참가자들은 글로벌 규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또 외환시장의 투명성, 효율성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 선언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언서 양식과 함께 선언서의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explanatory note)도 첨부되어 있다.

윤리(Ethics)

윤리의 기본원칙(Ethics Leading Principl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공정성 및 청렴성(fairness and 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적이며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의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인 행동은 외환시장의 공정성 및 청렴성의 바탕이 된다. 윤리적 및 전문가적 행위의 핵심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시장참가자들(기업과 소속 직원 모두)은 글로벌 규범의 특정 지침을 적용할 때나 외환시장에 참가할 때 모두, 아래에 기술된 상위 원칙들에 따라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원칙 1

시장참가자들은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추구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고객 및 여타 시장참가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고객 및 여타 시장참가자와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 청렴하게 행동하며, 의심스러운 관행과 행동은 피한다.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관리자, 소속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기업은 조직 내에서 윤리적 가치와 행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전반으로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고위경영진 및 일선관리자(senior and front-line management)는 윤리적 가치를 기업문화에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소속직원에게 언제든지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판단을 내려야 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상황에 따라 대·내외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보고하거나 우려를 제기(escalate issues of concern)하여야 한다.

원칙 2

시장참가자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적 기준을 추구하여야 한다.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행동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다.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된다.

- 적용법규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동 법규의 준수
- 충분한 관련 경험, 전문 지식 및 자격요건 취득
- 유능하고 능숙한 업무처리
- 거래실행 방법, 기록물 관리 및 윤리적 행동 등 소속회사의 지침과 운영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 전문가적인 판단
- 외환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기업들은 자신의 직무를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 3

시장참가자들은 이해상충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윤리적 또는 전문가적 판단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것으로 여겨지는 실제적 및 잠재적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이해상충 발생시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객들과 여타 시장참가자들에게 공정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직원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정책을 따라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개인 또는 회사의 이해가 고객 또는 다른 시장참가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황, 또는 고객의 이해가 다른 고객의 이해와 상충되는 상황
- 사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s)
- 선물 및 향응(gifts and corporate entertainment)

- 개인 거래(personal dealing)

시장참가자들은 이해상충의 제거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리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직무 또는 보고선의 분리
- 정보보호장치(information barriers) 마련(특정 부서의 물리적 분리(physical segregation) 또는 전자적 분리(electronic segregation))
-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직원업무의 변경
- 관계자로 하여금 이해상충 문제를 규명하고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
- 규명된 이해상충, 사적 관계 그리고 선물 및 향응공여에 대한 공개 정책 또는 기록
- 개인 거래에 대한 정책 및 통제방안 마련

특정한 이해상충이 합리적으로 예방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관계된 서비스 및 활동수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 시장참가자들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해상충과 관련된 거래 또는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해상충 문제의 충분한 세부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지배구조(GOVERNANCE)

지배구조의 기본원칙(Governance Leading Principl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활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포괄적 감독을 정하고 외환시장에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규범에 수록된 행동원칙들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별 지배구조는 기업의 복잡성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택된 지배구조의 실제 구조는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활동 규모와 복잡성 및 성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적용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4

시장참가자의 FX 업무전략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궁극적 업무책임(responsible)을 지닌 조직 또는 개인은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활동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와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의 FX 업무전략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궁극적 업무책임을 지닌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을 마련해야 한다.

-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책임라인을 갖춘 운영 구조
- 적절한 경영정보에 기반한,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활동에 대한 효과적 감독체계
-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게 효과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환경
- 시장참가자들의 외환시장 활동이 시장참가자의 운영 위험과 행동지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통제 기능 및 메커니즘. 이러한 기능은 충분한 위상과 자원, 그리고 시장참가자들의 FX 업무전략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 시장참가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시장참가자의 전자거래 활동이나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포함한다.

원칙5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동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고위경영진은 시장참가자의 관련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관행, 가치 그리고 규범을 명확히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직원들이 (i) 외환시장참여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치, 윤리, 행동규범과 (ii) 자신들과 관련되는 적용법규(원칙 25 참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모든 관련 직원들(고위경영진 포함)로 하여금 시장참여자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칙6

시장참가자들은 윤리적이며 전문가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시장 관행과 활동을 증진시키는 보수 및 승진체계를 보유하여야 한다.

기업의 보수 및 승진체계는 그 기업의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관행 및 활동을 장려해야한다. 반대로 부적합한 행동과 관행 또는 전체적인 경영위험척도를 넘어선 시장참가자의 위험선호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단, 이에 한정되지 않음)

- 급여체계의 균형
- 성과급의 지급 시기와 방법

- 단기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직원들의 이해관계와 회사측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방법
- 부적합한 관행 또는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

원칙 7

시장참가자들은 잠재적으로 부당한 관행이나 행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다음을 목표로 효과적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 및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1) 잠재적으로 부당한 관행이나 행동에 대해 직원 또는 외부 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밀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2) 이러한 보고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고 대처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업들은 관계 직원들과 외부관계자들이 보복 또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부당한 관행과 행동(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의문스러운 관행과 행동 등)에 관해 기밀을 유지한 채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장참가자의 잠재적으로 부당한 관행이나 행동에 대한 보고는 독립적인 조직 혹은 기능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필수적인 자원과 접근성을 갖춘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문제의 본질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의 내부보고(escalation) 및 기업 외부로의 보고는 경우에 따라 조사결과가 도출되기 전에도 실행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시장참가자 내의 해당 개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 등 관계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거래실행(Execution)

거래실행의 기본원칙(Execution Leading Principle) :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을 보다 견고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거래의 협상과 실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실행되고 이 거래실행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들이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FX거래가 이루어지는 배경(landscape)은 다양하다. 모든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거래실행에서 자신의 역할에 관계없이 외환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

원칙 8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거래 자격(capacity)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주문관리 및 거래실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자격(roles and capacities)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아우르는 표준계약(standing agreement)이나 여타 업무별 계약(other terms of business)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 거래별로(on a trade-by-trade basis) 역할을 결정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관리할 수도 있다. 만약 시장참가자가 자신 혹은 거래상대방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한 대체 계약(alternative arrangement)이 양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고객의 주문을 접수한 시장참가자는

- 고객의 지시에 따라 주문과 관련된 시장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대신 실행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주문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위험(시장위험과 신용위험 포함)을 부담하는 거래주체(Principal)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거래주체 당사자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며 쌍방이 동의하기 전까지 주문을 실행할 의무가 없다. 주문 접수시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주체로서의 당사자가 일부 재량을 부여받는 경우,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원칙 9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권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고객의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거래처리 방법 및 바람직한 관련 실무는 앞서 원칙 8에서 서술된 시장참가자들의 역할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전통적으로 거래주체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대리인에 기반한 거래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원칙은 거래주체 및 대리인 모델(Principal and Agency models)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플랫폼 및 딜러간 브로커(Interdealer Brokers) 역시 포괄하고 있다.

역할(Roles)

시장참가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 고객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추구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진술(statements)에 있어 진실해야 한다.
-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그들이 제시한 가격이 확정가격(firm)인지 아니면 단지 참고가격(indicative)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동 고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주문을 거절하는 적합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원칙 12 참고)
- 고객 주문을 협상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모든 관련 정보(disclosures and information)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주문처리 방법, 예를 들면 주문이 다른 주문들과 합쳐져(aggregated) 처리되는지 또는 시간 우선 순위에 따라(time prioritized) 처리되는지 여부 등
- 공개된 거래조건에 따라 주문이 전자적 또는 수동적으로(electronically or manually) 처리될 가능성
- 거래실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포지셔닝, 고객 주문을 관리하는 시장참가자가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시장 유동성 및 시장 상황, 다른 고객의 주문, 거래실행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전략 등
- 재량이 존재하는지 또는 예상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량의 행사 방법

- 가능한 경우, 시간기록 정책(time-stamping policy)이 어떻게 되는지, 주문접수시 기준인지 거래실행시 기준인지 여부(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원칙 36 참조)

거래주체로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참가자들은:

- 거래주체가 고객과 거래하는 조건을 밝혀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거래주체는 고객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행동함
 - 호가 요청, 참고가격(indicative prices) 요청, 주문 관련 논의 또는 주문 요청, 그리고 거래실행과 연관된 모든 의사표현과 관련하여 거래주체가 의사소통하고 거래하는 방법
 - 자기계정 거래(principal-dealing) 및 시장조성 거래(market-making activity)에 있어서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파악하고 다루는 방법
- 시장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자신의 거래전략, 포지셔닝, 부담하는 위험(risk assumed), 시장 유동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조성 및 위험관리(예: 헤지)를 해야 한다.
- 본 글로벌 규범내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마크업(Mark Up) 관련 내부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참가자들은:

- 그들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고객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고객이 요청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객의 주문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한 거래실행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 거래실행 장소(execution venues)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대리인이 고객의 주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정보
-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요금과 수수료를 명시한 거래조건에 대해 고객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 경쟁호가의 요청이 필요한 때에만 대리인으로서 접수한 주문 관련 정보를 시장 조성자 또는 자기계정 거래 담당자와 공유해야 한다.(정보공유 원칙 19 참조)

외환 전자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 사용자들에게 투명한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전자 호가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약이나 필요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시장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시점에 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와 시장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혜택 등에 대해 적절히 공개해야 한다(이에 따라 고객들은 가용한 서비스들 중에서 선택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딜러간 브로커(이하 IDB)로 행동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 위에 언급된 대리인으로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DB는 보이스 브로커로서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고 일부나 전체를 전자 방식으로 중개할 수도 있다. 전산화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간주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참가자들은 상기된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 시장 참가자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으로 행동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 위에서 언급된 거래상대방의 책임들을 인지해야 한다.
- 그들이 요청하고 수행하는 거래와 관계된 다양한 위험들을 인지해야 한다.
- 그들이 받은 거래실행(the execution)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원칙 10

시장참가자들은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양한 주문유형별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주문 유형에 따라 거래실행을 위해 특별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는지 숙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손절매 주문(Stop Loss Order)을 처리하는 시장참가자들은:

- 손절매 주문의 조건(기준가격, 주문규모, 거래시기 및 실행조건)을 충분히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 손절매 주문의 실행조건에 근접한 수준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거래가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험관리거래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쳐 손절매 주문이 실행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실무의 참고 사례:

- 손절매 주문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래 또는 그 밖의 행위
- 의도적으로 손실을 유도하기 위해 손절매 주문을 제안

분할거래(partial fills) 등을 포함하는 고객 주문을 이행하는 시장참가자들은:

- 고객 주문의 이행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시장 상황 및 고객에게 공개된 다른 관련 요인들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관련 정책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고객 주문(분할거래 포함)의 이행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고객 주문간 우선순위와 고객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거래한도(credit line)를 고려하여 고객이 정한 기준(parameters)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고객주문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특정 픽싱(Fixing) 환율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픽싱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참가자들은:

-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 공모(collusion)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접적으로 또는 픽싱 관련 고객 주문을 이용하여, 픽싱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벤치마크 픽싱 환율에 고의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환율 벤치마크 보고서(Foreign Exchange Benchmark Report)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그와 같은 거래의 수락에 내재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

가격을 산출

- 픽싱 주문을 접수하고 실행하기 위한 내부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허용 가능한 실무의 참고 사례:

- 고의적으로 시장 가격이나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픽싱 시간(fixing window) 전, 중 또는 후에 나누어(over time) 주문을 거래하는 행위
- 모든 고객의 주문(interest)을 접수하여 순 금액(net amount)만큼 거래를 실행

허용되지 않는 실무의 참고 사례:

- 고객에게 불리하게(against the Client)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려는 의도로 픽싱 산출시간(fixing calculation window) 중 수초간 고객의 주문(interest)보다 큰 규모로 매수하거나 매도
- 고의적으로 시장 가격이나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픽싱 산출시간 직전에 매수하거나 매도
- 고객에게 불리하게(against the Client) 픽싱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픽싱 산출시간 동안 시장에 대규모 거래 의사를 표현
- 특정 고객의 픽싱 거래를 (specific Client dealing at a fixing rate)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고객의 이해(interest)에 반하여 픽싱 환율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기 위해 다른 시장참가자들과 공모(정보공유 원칙 19 및 20 참조)

마지막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특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M&A 활동 등과 관련된 거래와 같이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 11

시장참가자는 거래주체(Principal)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만 고객주문을 사전헤지(Pre-Hedge)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사전해지는 한 건 이상 예상되는 고객주문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 이는 동 주문 또는 연관된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전해지를 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고객이 거래실행과 관련한 선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해지 관행에 관해 고객과 의사소통해야 한다.

- 사전해지가 앞서 열거한 원칙들에 부합하여 실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시장참가자는 (유동성과 같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prevaling market conditions) 및 예상되는 거래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사전해지를 실행하는 동안 시장참가자는 위험관리, 시장조성 및 여타 고객주문의 실행을 포함한 진행중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사전해지가 앞서 열거한 원칙들에 부합하여 실행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일거래(single transaction)의 사전해지는 시장참가자의 전반적인 익스포저를 감안하는 거래활동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시장참가자가 대리인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사전해지를 할 수 없다.

사전해지와 관련된 예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원칙 12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의 청렴성을 저해하거나 시장기능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호가를 제시하거나 거래전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략은 과도한 처리지연(undue latency), 인위적인 가격변동,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거래실행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 깊이(depth) 및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공모 혹은 조작거래를 포함하는데, 거래 실행전에 취소할 의도로 매입/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spoofing", "flashing", "layering" 등으로 표현)나 시장의 가격, 깊이,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행("quote stuffing", "wash trades" 등으로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시장참가자들은 항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호가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목적으로만 제시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상황과 그들의 거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거래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시장상황에 기초한 가격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 예컨대 과거 가격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행위(historical rate rollovers) 등의 거래는 내부준수지침(internal compliance policies)에서 다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거나 왜곡할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고객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주문 처리 및 시장 교란에 대한 예시는 부록 1을 참조

원칙 13

시장참가자는 거래 및 주문과 관련하여 고가 및 저가를 포함한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의 설정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해당사자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공시를 포함하여)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설정한 가격이 이러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입력값(input)으로 쓰이는 경우, 양측은 모두 그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는지, 그리고 제3자가 설정한 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 14

거래주체(Principal)로서 행동하는 시장참가자가 고객거래에 적용하는 마크업(Mark Up)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마크업은 시장참가자의 위험 감수, 발생비용,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최종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스프레드 또는 요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와 관련한 공개정보(a set of disclosures)를 문서화하고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최종 주문가격에 마크업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분명히 한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일지라도 고객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고객에게 분명히 한다.
- 마크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관련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속성, 폭넓은 고객 관계 등 포함)들을 설명함으로써 마크업 결정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 마크업이 특정 가격수준과 연계되거나 특정 가격수준에서 실행되는 주문의 가격결정이나 거래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공개한다.

기업들은 소속직원이 적절하고 공정한 마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동 정책과 절차는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부과되는 가격이 시장여건, 내부 위험관리 실무 및 정책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지침
- 소속직원이 마크업 결정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이어야 한다는 지침(마크업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잘못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포함)

시장참가자들은 마크업 관련 실무가 자신의 정책 및 절차,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개정보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마크업은 시장참가자 내부에서 감독받고 보고되어야(oversight and escalation) 한다.

마크업에 대한 예시는 부록 1을 참조

원칙 15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거래 불일치(trade discrepancies)를 발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불일치 발생 시 즉시 대처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는 프라임브로커 고객에 의해 실행되는 공인된 거래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의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프라임브로커 고객과 실행 딜러는 프라임브로커를 통한 불일치의 신속한 수정 및 거래조건 매칭을 위해 거래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원칙 16

보이스 브로커들은 거래주체간 거래가 성립되기에 신용(credit)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당사자 변경(name switching)을 실행하여야 한다.

보이스 브로커들이 당사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 해당 거래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 적절한 승인절차가 있어야 한다.
- 그러한 거래를 관계된 기밀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한다.

달리는 보이스 브로커로부터 이름변경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원칙 17

시장참가자들은 라스트룩(last look)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해야 하며 적절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스트룩은 전자거래에서 거래 요청을 받은 시장참가자가 해당 호가에 거래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최종 기회를 가지는 관행을 가리킨다. 거래 요청을 받은 시장 참가자들은 라스트룩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배구조와 통제를 공개된 약관에 맞추어 구비하여야 한다. 이는 적절한 관리와 준법감시를 포함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라스트룩 관행에 대해 투명하게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라스트룩이 그들의 거래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의 승인 혹은 거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방 또는 하방으로의 가격변동, 의사 결정에 소요될 예상시간, 보다 넓게는 라스트룩 사용의 목적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라스트룩이 사용된다면 그 목적은 거래의 타당성 및 가격을 확인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타당성 검증은 해당 가격에서의 거래요청에 대한 세부 사항이 운영 관점에서 적절한지, 또 주문 요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가격 체크는 거래 요청이 들어온 가격이 현재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라스트룩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는 타당성 및 가격 검증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고객의 주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고객 주문을 거절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 위험을 고객에게 남길지 여부를 판단할 독자적인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글로벌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라스트룩은 고객의 주문을 받을 의도가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시장참가자가 거래요청을 받는 라스트룩 과정(Last look window) 시작 단계에서 기밀정보가 발생하며 이러한 기밀정보의 사용은 정보공유 부문의 원칙 19 및 20에 부합하여야 한다.
- 라스트룩 과정에서 고객주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행한 헤징 활동 등의 거래행위는 시장의 바람직한 관행과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고객의 거래 의도에 대한 신호를 다른 시장참가자들에게 보내게 되어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1)고객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2)시장참가자가 고객 거래요청을 거절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밀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이 고객들과 주문 요청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주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취급을 포함하여)에 관해 서로 대화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다. 이러한 대화에는 고객의 거래요청에 대한 가격결정 및 주문실행과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계수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고객이 주문요청 취급과 관련된 평가를 내림으로써 중장기적인 거래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칙 18

알고리즘 거래 또는 애그리게이션(aggregation)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가격과 수량 등을 포함한 주문의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차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또한 고객에게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많은 유동성 공급처 또는 거래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으로 이들 유동성 공급처 및 거래 장소에 주문을 보내주는 것(order routing)을 포함한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및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알고리즘 실행 전략 또는 애그리게이션 전략과 관련한 명확한 설명,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거래정보(관련된 기밀사항을 적절히 보호한 수준에서 제공)
- 알고리즘 또는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주체(Principal)로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비용
- 알고리즘 거래 서비스에서 주문전송(routing) 기본설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
- 애그리게이션 서비스에서 접근권이 제공된 유동성 공급처에 대한 정보

알고리즘 거래 공급자의 고객은 이러한 데이터 및 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그들의 거래실행 전략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거래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동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호가되는 가격을 정의하는 매개변수를 이해해야 한다.

알고리즘 거래 또는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고객에게 공개된 방식대로 수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정보공유의 기본원칙(Information Sharing leading Principl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의 강건성, 공정성, 개방성, 유동성,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효과적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보호하여야 한다.

I. 기밀정보의 취급(Handling Confidential Information)

원칙 19

시장참가자들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식별해야 하며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기밀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기밀정보는 시장참가자들이 취득하거나 생산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i) **FX거래정보(FX trading information):** 거래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되는 민감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들의(또는 시장참가자 고객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거래 활동 또는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시장참가자의 주문 관련 세부사항(Details of a Market Participant's order book)
 -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Axe(특정 호가에 대한 관심)
 - 시장참가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스프레드 매트릭스(spread matrices)
 - 벤치마크 픽싱 주문(Orders for benchmark fixes)

- (ii) **지정기밀정보(Design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시장참가자들은 기밀정보(confidential) 및 독점정보(proprietary) 등과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비공개 기준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화된 비공개 협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밀정보 협약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기밀정보의 식별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또는 계약상 제한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Axe : 시장참가자나 고객이 특정 호가에 대한 이해관계(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반대쪽 호가)을 일컫는 용어로서 예를 들어 특정 시장참가자가 매수 포지션(long positions)을 들고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타 참가자가 제시하는 매도쪽 호가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 등을 말함. 이 경우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트레이더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됨

* spread matrices : 시장참가자들이 옵션 거래시 필요한 정보(델타, 세타, 변동성, 이자율 등)를 모아놓은 화면

시장참가자들은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시장참가자들은 내부 위험 관리, 법적 요건, 준법감시 필요성 등으로 기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대내외 관계자 이외에게는 기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시장참가자들은 기밀정보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내외 관계자들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고객, 잠재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는 동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경우 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프라임브로커인 시장참가자들은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를 여타 영업 및 트레이딩 업무와 적절한 수준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는 적절한 정보장벽(information barriers)을 보유하여야 한다.
 - 프라임브로커들은 그들이 요구하거나 채택한 기준에 대해 투명하여야 한다.

시장 분위기(Market Colour) 관련 논의들은 원칙 22를 참고

원칙 20

시장참가자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시장참가자들은 다음을 포함(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한 특정한 경우에서만 기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거래의 실행, 진행, 청산, 계약갱신 또는 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시장 중개인(예 : 브로커 또는 거래플랫폼) 또는 여타 시장참가자들에게 공개
- 거래상대방 또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적용법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또는 관련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 정책목적에 위해 중앙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참가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밀정보를 보호하기로 한 자문사 또는 컨설턴트에게 공개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이전 포지션들 또는 거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활발히 선택할 수 있다. 단, 그 정보가 다른 단체의 기밀정보를 드러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정보를 시장기능을 저해하거나 가격발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는 여타 조작 및 담합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시장참가자들은 상기 원칙 20에 부합하는 적절한 경우에만 기밀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기밀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법규와 함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합의(agreed-to restrictions)를 고려하여야 한다.

II. 의사소통(Communications)

원칙 21

시장참가자들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전문가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은 전달받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은 전달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integrity)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출처는 제3자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예: 뉴스 서비스).
- 의견은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허위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판단을 내리고, 소문이 단지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시장참가자를 속일 의도로 소문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장참가자들이 분할주문 거래시 동 주문이 전체 물량인지 또는 일부 물량인지 질문을 받는다면, 전체 물량으로 부정확하게 암시하기 보다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소속직원의 의사소통이 동 직원이 소속된 기업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시장 전체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칙 22

시장참가자들은 시장분위기(Market Colour)에 대한 의견교환 시 기밀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의 전반적 상황, 견해 및 익명의 포괄적인(anonymised and aggregated) 수급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장분위기(Market Colour)를 적시에 공유하는 것은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방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들은 소속직원에게 시장분위기를 적절히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교환은 익명성이 보장된 포괄적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 정보교환시 특정 고객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신분 또는 거래유형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거나(예: 특정 시장참가자를 암시하는 코드명 사용), 또는 개별 고객에 특정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고객의 그룹, 위치 및 전략은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기밀정보를 유추해낼 수 없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 정보교환은 시장에 대한 견해(market views)와 이에 대한 확신의 수준(levels of conviction)을 공유하는 데까지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별 거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수급 정보는 가격 범위로만 공개되어야 하며 개별 고객 또는 개별 수급과 관련된 정확한 가격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래량은 공개적으로 보고된 거래 내역 외에는 개략적으로(in general terms) 언급되어야 한다.
-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구조와 관심주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여야 한다.
- 거래실행 시간에 대한 언급은 명백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략적(general)이어야 한다.

- 시장참가자들은 고객에게 주문 상태에 관한 정보(취합되고 익명으로 가공된 픽싱주문을 포함)를 제공할 때 그 정보와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시장참가자의 이해를 보호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특히 다수의 주문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근접한 수준에 몰려있을 경우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 시장참가자들은 시장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도중에 기밀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시장분위기(Market Colour) 공유에 대한 예시들은 부록 1을 참조

원칙 23

시장참가자들은 승인된 의사소통 방식과 경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추적(traceability), 감사(auditing), 기록유지(record-keeping), 접근통제(access control)가 가능한 승인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여타 시장참가자와 소통해야 한다. 정보보호 기준은 의사소통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승인된 의사소통 방식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거래를 하거나 시장분위기를 공유할 때에는 세일즈 데스크와 트레이딩 데스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기록할 것이 권장된다. 시장참가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예: 비상상황시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방법(lines)의 사용을 고려해야하나 그 방법(lines)의 이용에 관한 지침을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기본원칙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위험에 대한 파악, 관리, 그리고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통제 및 준법감시 환경을 도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I. 위험 관리, 준법감시 및 검토(review) 체계(Framework)

적절한 위험 관리, 준법감시 및 검토 체계는 시장참가자들의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체계들의 복잡한 정도와 범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공통 요소가 있다. 예를 들면:

- 책임은 업무수행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영업 부서(business unit)에 있다.
- 또한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위험관리 부서와 관련 법규와 기준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준법감시 부서가 있다.
- 마지막으로 영업 부서, 위험관리 부서 및 준법감시 부서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업무수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감사(또는 검토) 부서가 있다.

또한 위험 관리 체계하에 양적·질적 가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위험과 준법감시 통제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도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원칙들은 위험 관리, 준법감시 그리고 검토를 위한 견고한 체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제안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거래규모, 외환시장 행위의 복잡성, 외환 시장참여의 성격을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어떤 제안이 적합할지 평가해야 한다.

원칙 24

시장참가자들은 위험 관리와 준법감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두 체계의 공통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원칙 4에 부합하는 관리자급 직책의 효과적 감독. 여기에는 적절한 직책 권한 및 위험 관리와 준법감시 업무의 독립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 관리자급 직책은 FX업무의 위험 선호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

- 관리자급 직책은 권한, 한도 및 정책을 명확히 명시한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의 마련, 홍보, 소통, 집행 및 정기적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험은 마련된 위험 관리 원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 관리자급 직책에 대한 간결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위험 및 준법감시 관련 정보의 제공
- 거래실행을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와 분리하고 또한 거래처리, 회계 및 결제로부터 분리하는 등 직무와 독립적 보고 라인의 적절한 분리. 위험 관리자와 준법감시 담당직원이 영업부서와 밀접하게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 관리와 준법감시 기능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보상체계는 동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 명확히 명시된 역할, 책임, 권한(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포함)을 지닌 직원과 충분한 자원. 동 직원은 적합한 지식 및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원칙 25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외환시장 활동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함과 아울러 적절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효과적인 준법감시 체계는 독립적인 감독과 통제를 제공해야 하고, 아래의 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외환시장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규와 기준에 대한 파악
- 교란, 담합, 조작하는 행위, 사기,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고 추적하며 외환시장 활동의 일반적 실행과정에서 대두되는 실제적인 위험을 완화하도록 고안된 적절한 절차
- 관련법규와 기준에 대한 준법감시 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기록의 생성 및 보관
- 문제 확인시 적합한(well-defined) 상부보고(escalation) 절차의 확립
- 사기성 행위의 적발을 위한 명령휴가 사용 등을 통해 개인 직원의 거래 접근을 정기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
- 적용법규, 정책 및 절차 형태의 외부 규범 및 기타 지침 그리고 준법감시 매뉴얼

얼 및 내부 행동 규범 등을 포함한 기타 문서에 대한 올바른 도입 관련 조언과 지침을 관리자급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

- 관련법규와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또는 서약서 제출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적절한 도입과 활용(예를 들어, 매일의 활동 및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 확립 등)
- 준법감시 기능 및 통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평가. 이는 준법감시 기능 및 통제에 있어 중요한 결함이나 실패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위 관리자가 감독해야 한다.

원칙 26

시장참가자들은 외환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적절한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시장참가자들이 노출되어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파악(아래의 “주요 위험 형태” 참조)하고 이해함으로써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위험 한도 및 모니터링 체계의 설정, 위험 완화 및 여타 건전성 관련 실무의 적용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위험관리 체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다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위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문서화된 승인 절차
- 외환업무 전체에 걸친 위험에 대한 파악, 측정, 종합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이고 문서화된 전략. 여기에는 예를 들어, 프라임브로커로서 고객 거래를 중개하거나 시장접근권을 제공하는 시장참가자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포함된다.
-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평가되는 문서화된 방침, 절차 및 통제
- 위험 관리 정책 및 통제방안의 기관내 인식과 준수 수준의 제고를 위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동 정책과 통제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직원대상 절차 및 프로그램
-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적시 보고를 위한 정보 시스템
- 적절한 상부보고, 완화조치 및 과거 사례로부터의 교훈 등을 포함한 견고한 사건·사고 관리
- 모든 상품,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엄격한 위험 평가(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

-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가치평가 방식을 포함한 건전한 회계 규칙 및 관행
- 미비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한 견고한 위험 통제 및 자기평가 절차

어떤 시장참가자들은 다른 시장참가자들에게 신용증개 및 시장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예를 들면 프라임브로커와 전자거래플랫폼 등). 이러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반영한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관한 기대를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도록 권장된다.

원칙 27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거래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제한하고 모니터링하며 통제하는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실패·취소 또는 오류 거래에 대한 파악 및 보고를 포함한 모든 거래활동에 대한 규칙적인 모니터링
- 시장 위법행위 또는 조작(실제 또는 시도 포함)을 발견하기 위한 자동 또는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 거래감시 담당 직원은 공정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외 가격(off-market rates), 반복적인 주문,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큰 규모의 주문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행위를 선별하는 특정한 통계 또는 계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관행이 신속하게 검토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 위험 관리 및 회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 동 검증은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부서로부터 독립된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위험 포지션 및 트레이더의 손익 현황에 대한 규칙적이고 적시성 있는 관리책임자 앞 독립 보고. 필요시 이례적으로 손익이 기대수준에서 벗어난 경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위험 포지션이 정확하고 적시에 산출되도록 거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무리되어야 한다.
- 프론트, 미들, 백오피스 시스템의 정기적인 대사. 차이 파악 및 해결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직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 위험 한도가 벗어날 경우 상위관리자에 대한 적시 보고. 익스포저를 제한 범위 안으로 되돌리는 후속 조치 및 재발을 막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 전자 거래의 경우 주문실수 등에 따른 일괄취소(kill switches) 또는 중앙통제 조절판(throttles) 등을 포함한 올바른 주문 및 호가 제시를 보장하는 적절한 통제. 동 통제는 미리 정해진 규모·가격한도 및 금융 익스포저 제한을 넘어서는 오류 주문 또는 호가제시의 시장 진입 및 전송을 막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단일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계획을 지녀야 한다.

원칙 28

시장참가자들은 위험 관리와 준법감시 기능의 효과성 및 준수 상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내부감사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감사결과는 기록되고 향후 보완조치도 추적되어야 한다.
- 감사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FX거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실제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감사팀에게는 감사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권한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감사 결과는 검토 및 후속조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은 기관내 감사 부서에서 수행될 수 있다.

II. 주요 위험 형태(Key Risk Types)

시장참가자들은 그 규모와 외환시장 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원칙들은 외환시장 활동과 관련된 주요 위험 형태와 바람직한 관행들의 개요를 보여준다.

신용/거래상대방 위험

원칙 29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필요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준차액결제합의서*(master netting agreements) 및 신용보강협약**(credit support arrangements) 등 상계와 담보의 이용을 포함한다.

* 복수의 파생 계약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파기시 현금 담보 및 모든 계약에 대한 차액을 한번에 한 통화로 차액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상대방간 합의

** 장외파생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담보계약

표준차액결제합의서와 신용보강협약을 활용함으로써 FX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거래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평가, 필요시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에 대한 충분한 분산,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한도에 대한 신속한 조정 및 모니터링 그리고 승인한도 범위 내에서의 거래 수락(acceptance)이 있다. 신용한도는 프론트오피스와는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미리 수립된 시장참가자의 위험 성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기록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대화내용 기록 및 서신교환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존규정은 적용법규에서 정한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시장 위험

원칙 30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위험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며,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환율 변화는 시장위험을 확대시켜 시장참가자의 재무적 상황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위험의 측정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정 기법 및 개념에 기반하여야 한다. 동 측정기법은 정기적·독립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위험의 측정은 헤지 및 분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는 FX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

원칙 31

시장참가자들은 거래포지션으로부터 생기는 손익 규모 및 시장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거래포지션에 대한 시가평가(mark-to-market)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거래포지션을 시가평가하는 데 있어, 입수 가능하다면, 시장가격이 최선의 기준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외부 데이터를 입수할 때,

- 데이터의 유용한 원천은 스크린서비스, 브로커 및 여타 제3자 제공자를 포함한다.
- 프론트오피스와 독립된 부서가 가격 및 시가평가가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데이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가격이 가장 최근의 실제 거래된 가격인지, 언제 마지막 거래가 체결되었는지, 만약 실제 가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각각의 거래일에 대해 장종료시각(close of business)을 내부 합의하에 정해야 한다. 종료시각은 일별(end-of-day)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시장가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복잡한 파생상품 또는 이색 상품에 대한 시가평가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프론트오피스와 독립적인 내부 부서에 의해 인가받은 내부모형이 이용될 수 있다.

운영 위험

원칙 32

시장참가자들은 인간의 실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오류, 외부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차 또는 산업 관행 등 국가별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실수, 위법행위, 시스템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업무방해, 테러 또는 태업 발생시 거래구역 및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엄격한 보안수단을 도입해야만 한다. 거래담당 외 직원 및 외부 방문자의 딜링룸 접근은 시간제한, 보안확인, 관리자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원칙 33

시장참가자들은 대규모 재해, 거래플랫폼 및 결제 등 중요 서비스와의 단절, 또는 여타 시장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각자의 특성과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complexity)에 적합한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FX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이는 데이터의 보관 및 사용 그리고 FX 픽싱가격이 이용불가한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다.
- 비상대응계획의 정기적인 재검토, 업데이트 및 테스트. 이는 비상상황 하에서 경영진과 해당 직원들이 동 계획에 익숙해질 수 있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 특히 동 비상대응계획을 발동하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 시스템 및 절차 백업을 포함한 재난복구계획(disaster recovery plan). 모든 중요한 자동화 프로세스는 문서화된 자동화 또는 수동 비상대응방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외부 의존사항에 대한 식별. 이는 결제시스템 운영업체와 여타 인프라 및 주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지속계획(BCP)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동 계획들 혹은 여타 백업 프로세스를 시장참가자 자신의 업무지속계획에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내외부 관련자의 비상연락정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 필수 직원과 시스템 및 운영작업을 수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으며 관리되는 백업장소

기술 위험

원칙 34

시장참가자들은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모든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변경은 내부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완벽한 감사 기록이

사후 검토를 위해 저장되어야 한다. 이는 트레이딩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개발, 테스트, 배치 및 향후 업데이트에 적용되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외환시장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위험 등 보다 광범위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장참가자들은 플랫폼의 일중 상태(예: 시스템 가동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요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견실한 거래처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역량 테스트(periodic capacity tes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자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오류 또는 시장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자 호가를 만들어 내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거래오류 또는 시장교란의 예로는 시장외(off-market) 호가 또는 거래, 주문 오류, 기술장애로 인한 의도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은 거래 발생, 거래 로직의 결함 및 예기치 못한 극한적 시장상황 등이 포함된다.

시장참가자들은 수취인의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거나 공시된 기술적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이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Throttling logic 또는 Circuit breaker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플랫폼의 용량을 넘어서는 message rates는 통제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플랫폼 운영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밝혀진 모든 결함들은 적절하게 상부로 보고되어야 한다.

호가를 제시하거나 수취하는 참가자들 사이의 전자거래 플로우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이 기존 참가자들의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제공자 및 복수은행 호가제공 플랫폼(multibank venues) 등 전자호가 제시 및 수취를 하는 시장참가자들은 모든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제 위험

원칙 35

시장참가자들은 결제위험을 관리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신중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거래 활동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즉각적인 해결 수단을 포함한다.

결제실패는 시장참가자들을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결제 익스포저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결제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지급상계(payment netting) 및 양자간 채무 상계(bilateral obligation netting)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래확인 및 결제」 부문 참조

준법감시(Compliance) 위험

원칙 36

시장참가자들은 투명성 및 감사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시장 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일관적이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승인받지 않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효율적인 감사가능성 및 고객 앞 투명성 보장을 위해 체결된 주문 및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상기한 기록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날짜와 시간, 상품 유형, 주문 유형(예, 손절매성 거래, 라스트룩 대상 거래), 수량, 가격, 트레이더 및 고객 신원 등. 시장 참가자들은 충분히 세분화되고 일관된 시간표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접수 시간과 실행시간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의 저장 및 유지를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정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객의 주문 및 거래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시장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동 정보는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시장참가자들이 내부규정 및 시장내 행동기준의 준수상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시간외 또는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직원, 허가된 거래 형태 및 한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서면 보고절차가 도입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원칙 37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거래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know-your-customer, KYC)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KYC 원칙 집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거래확인 및 결제 부문 원칙 52 참조).

시장참가자들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의심스러운 행위가 시의적절하게 보고(예를 들어, 준법감시 담당자 혹은 필요시 관련 당국에게)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련 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들은 동 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의심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고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자금세탁 수법에 발맞추어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 38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에게만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침과 절차(또는 지배구조 및 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 후 트레이더의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사후 감시뿐만 아니라 각 트레이더별로 어떠한 거래가 허용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트레이더 또는 데스크 의무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동 접근권한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허가받은 인원에게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실제 영업 목적이 아닌 거래를 이용하여 손익 또는 위험을 은폐하거나 조작(혹은 관련 시도)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원칙 39

시장참가자들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 가능성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거래 기록을 생성하여야 한다.

고객의 요청시 시장참가자들은 특정 거래 취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시장참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거짓되거나 관련성이 없는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자료 요청시 고객은 요청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고객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법률 위험

원칙 40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적용법규가 어떤 경우에 여타 시장참가자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해하여야 하며 법률위험을 완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계약서(legal agreement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표준계약서(standard terms and conditions)를 사용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시 시장참가자들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인지, 수정계약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변경내용이 중요한 경우 거래 이전에 동의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협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문서작성이 적시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프라임 브로커 활동 관련 고려 사항

원칙 41

프라임 브로커리지 참가자들은 모든 당사자의 위험 축소를 위해 그들의 시장활동 형태(profile)와 부합하도록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거래승인 및 신용제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참가자들은 신용한도 및 허가에 대한 적시 분배, 모니터링, 수정 및 종료 등을 포함한 견실한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프라임 브로커리지 고객들은 허가된 범위안의 거래만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가용 한도(acceptable line), 허가된 거래 유형 및 기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체결 딜러는 거래체결 전에 거래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지정 한도(designation limits)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프라임 브로커는 기브업(Give-Up)* 기준의 사후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의 요청에 의해 요청한 브로커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행위

프라임 브로커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협의 및 지정통지(designation notice)에 속하는 조건 등에 기준한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프라임 브로커는 한도 위반 예외사항, 한도 변경, 수정 및 갱신에 대해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거래확인 및 결제(Confirmation and Settlement)

거래확인 및 결제 (Confirmation and Settlement)의 기본원칙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예측가능하고 적시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튼튼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래 이후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원칙들은 FX거래의 확인 및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시장참가자들의 규모와 외환시장 활동의 복잡성 및 성격에 알맞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I. 전반적 원칙

원칙 42

시장참가자들은 운영실무(operating practices), 문서(documentation) 및 신용·법을 위험관리 정책 간에 일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운영실무(거래확인 및 결제 절차 포함)는 법적 문서 및 기타 문서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용위험 완화 수단은 이러한 문서 및 시장참가자의 신용위험 정책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원칙 43

시장참가자들은 정상적인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에서의(in both normal and peak conditions) 관리역량(capacity)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견고한 체계(robust framework)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소한 시장참가자들은 정상적인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FX거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end-to-end)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및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급격한 수요변화 발생시 이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mechanisms)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관리역량(capacity)과 성과관리절차(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문서화되어 갖춰져야 하며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원칙 44

시장참가자들이 프론트오피스 시스템에서부터 운영시스템까지 거래데이터를 일관자 동전송(straight-through automatic transmission)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거래데이터의 전송은 중간에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안전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데이터가 프론트오피스에서 운영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데이터가 운영시스템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충분히 통제되어야 한다.

원칙 45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의 갱신, 수정 및 취소가 신중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의 갱신(novating), 수정 및 취소 절차는 사전에 분명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운영, 영업 및 트레이딩 담당 직원 사이의 적절한 분리(segregation)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래의 수정 및 취소에 대한 보고는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I. 거래확인 절차(Confirmation Process)

원칙 46

시장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거래를 확인(confirm)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의 실행, 수정 또는 취소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확인(confirmation)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거래자동확인시스템(automated trade confirmation matching systems)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거래확인의 책임과 거래실행의 책임을 분리시키는 운영 실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거래확인은 가능한 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거래 확인을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FX거래 확인에는 표준 메시지 유형과 업계에서 합의한 양식(Standardised message types and industry agreed templates)을 사용해야 한다. 딜러간 브로커(IDB)를 통한 거래의 확인은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의 정확한 장부기입을 위해 IDB로부터 확증(affirmation)을 받아야 한다.

이메일과 같은 개방 통신방식을 이용할 경우 사기성 교신이나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기밀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만약 개방 통신방식을 통해 거래 확인을 주고받는다면 그 방법은 정보 보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정보공유 원칙 2 참조).

만약 시장참가자 쌍방이 전통적인 거래확인 메시지 교환을 대신하여 프론트엔드(front-end)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대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거래 데이터의 교환은 자동화되어야 하며 프론트엔드 시스템에서부터 운영시스템까지 일관(straight-through)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 시스템 간 데이터의 흐름이 변경되거나 삭제 혹은 고의적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거래 대조를 위해 전통적인 거래확인 메시지 대신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하기로 서로 합의할 경우 이는 쌍방간 법적 합의문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원칙 47

시장참가자들은 대량거래(block transactions)를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대량거래의 세부사항들은 거래실행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대신하는 투자관리자나 대리인은 거래 이후 관련 거래상대방(underlying counterparty)에게 배분하는 대량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대량거래에 관련된 각 거래상대방은 배분에 앞서 딜러-거래상대방 관계가 승인된 당사자여야 한다. 배분 이후의 거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통보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원칙 48

시장참가자들은 거래확인(confirmation) 및 결제(settlement)에 있어서의 불일치(discrepancies)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수신한 거래확인서 또는 미확인된 거래(alleged trades)가 자신의 거래기록과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내부적 조사를 거친 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거래 불일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모든 미확인 거래를 신중하게 대사하여야 하며 내부거래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미상의 거래확인서는 송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부보고(Escalation) 절차를 갖추어 미확인 상태거나 논란이 있는 거래조건을 긴급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동 절차를 통하여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경향을 감지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부보고 절차에는 트레이딩 부서 및 관련된 내부 당사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확인 절차를 가진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통지해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위 경영진들 또한 미확인된 거래의 수와 지연 수준(latency)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유지로 인한 운영위험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49

시장참가자들은 각 외환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이벤트(life cycle event)별로 고유한 거래확인 및 절차의 특징을 숙지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외환상품(특이한 속성을 지닌 상품을 포함하여)의 거래확인, 행사, 결제에 대한 방침 및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시장참가자들은 운영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외환상품의 추가적인 계약조건과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규약 및 절차들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운영위험을 줄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관련 용어, 계약 조항 및 외환상품에 대한 시장 관행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III. 상계 및 결제 절차(Netting and Settlement Processes)

원칙 50

시장참가자들은 결제위험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외환 결제위험을 적시에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의 FX거래와 관련된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결제절차와 결제위험 완화 수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결제시 상계(netting)(자동상계결제시스템 포함)를 권장한다. 시장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상계 방식의 지급결제 절차는 적절하게 상호 문서화(bilateral documentation)해야 한다. 상계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방식 모두 가능하다.

상계되는 거래의 최초 확인은 여타 FX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모든 초기 거래는 양자간 상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양자간 상계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결제금액의 상계절차는 관련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합의된 마감시점(cut-off point)에 각 통화별로 서로의 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시결제방식(payment-vs-payment settlement mechanisms) 등 결제위험을 완화하는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51

시장참가자들은 SSI(Standing Settlement Instructions)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관련 상품 및 통화에 대한 SSI가 시장참가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SSI의 개시, 증명, 유지에 대한 책임은 트레이딩 및 영업담당 직원으로부터, 이상적으로는 거래의 결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운영직원과도 명확히 분리된 직원에게 있어야 한다. SSI는 원활한 일관처리(Straight-through Processing)를 위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모든 관련 결제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 상품과 통화에 대해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여러 개의 SSI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결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품과 통화에 대해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여러 개의 SSI를 이용할 때에는 적절한 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SSI는 시작일이 설정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 및 수정할 때는(감사 추적기록 포함) 최소 2인 이상의 검토를 받는 등 적절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상용결제지시의 변경시에는 실행에 앞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거래상대방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SSI와 기존 SSI의 변경 및 통보는 가능한 한 인증되고 표준화된 메시지 유형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의 결제는 결제일(on the value date)에 시행중인 SSI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SI가 변경된 시점에 미결제 상태인 (그리고 결제일이 새로운 SSI의 시작 당일 혹은 그 이후인) 거래는 (상호간 또는 인증된 메시지 통신을 통해) 결제 이전에 재확인되어야 한다.

SSI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행 상용결제지시가 특정 거래에 부적절할 경우) 대체 결제지시는 최대한 빨리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는 인증된 메시지나 기타 보안성이 높은 방법으로 교환되어야 하며 이후 거래확인 절차의 일부로서 검증 받아야 한다.

* SSI : 두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결제에 대해 쌍방의 수취 대리 기관을 고정적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원칙 52

시장참여자는 직접지급(direct payments)을 요구하여야 한다.

FX거래에서 시장참가자들은 직접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제3자 지급(third-party payments) 방식이 운영위험을 증대시키고 모든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기타 부정행위에 연루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제3자 지급에 관여한 시장참가자들은 제3자 지급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침은 최소한, 지급자가 제3자 지급의 배경과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테러자금조달방지 및 여타 관련 법규에 따른 위험 평가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거래 이전에 양측 거래당사자는 제3자 지급 약정에 대해 상호합의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거래실행 이후 제3자 지급이 요청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필요하며 관련된 준법감시와 위험 승인이 요구되고 확보되어야 한다.

원칙 53

시장참가자들은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중 및 일별 자금조달 요구량(intra-day and end-of-day funding requirements)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각 계좌의 자금조달방법을 서술한 분명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Nostro 계정(nostro account)을 보유한 시장참가자들은 각 결제일별로 모든 거래, 취소 및 수정 등을 감안하여 동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당방계정의 당좌대월 위험(overdraft risk)를 줄일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국가간 시차와 환거래은행(correspondents)의 지시접수 마감시간(instruction receipt cut-off times)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지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당방은행이 적시에 지급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예상 명세서를(가능하다면 표준메시지유형으로) 주고 받아야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절차(escalation procedure)를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지급지시의 취소 및 수정을 처리하기 위해 당방은행과 소통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지급지시의 일방적인 취소와 수정이 가능한 시점을 이해하고 당방은행과 논의하여 이 마감시점이 해당 통화의 결제주기 시작 시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해야한다.

* Nostro 계정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외화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게 되므로 해외에 있는 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개설 은행이 이 계좌를 Nostro 계정이라 칭함

IV. 계정 대사 절차(Account Reconciliation Processes)

원칙 54

시장참가자들은 계정 대사절차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을 적시에 대사하는 대사 절차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대사(reconciliation)의 조기 실시를 통해 누락과 오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좌의 실제 잔액을 파악할 수 있어 계좌에 자금이 적절히 조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거래은행이 보유한 계좌잔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처리와는 무관한 직원이 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Nostro 계정에 대한 전체 대사(full reconciliation)는 가능한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Nostro 계정의 전체 대사를 위해 시장참가자들은 Nostro 내역서(Nostro activity statement)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Nostro 자동대사시스템(Automated nostro reconciliation system)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대사 현금흐름 또는 미결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보고절차(escalation procedures)가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원칙 55

시장참가자들은 적시에 결제 불일치를 파악하고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지급의 미수령, 지연수령, 금액 오류, 중복 지급 및 착오지급(stray payments)을 감지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결제에 실패한 상대방과 접촉하고 나아가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고는 결제실패와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commercial risk)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이 결제일에 지급을 못하거나 오류가 있는 지급(예: 중복 지급, 착오지급)을 받은 경우, 적시에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지급 미수령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운영부서 또는 트레이딩부서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가장 최근에 예측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화에 결제 익스포져(settlement exposure)를 반영해야한다. 시장참가자들은 결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고 지급 실패를 계속하는 거래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제한할 수 있다.

착오지불(Stray Payment) : 잘못된 곳으로 지불금액을 송부한 것 (송부금액이 길을 잃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는 의미)

부록 1(Annex 1) : 사례(Illustrative Examples)

글로벌 규범과 관련된 사례들은 원칙과 그러한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이 사례들은 매우 정형화된 것으로, 엄밀한 규칙, 규범적 또는 종합적 지침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들은 면책(safe harbour)을 제공하거나, 또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열거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주어진 사실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실성을 위해 일부 사례에서 시장내 특정 역할들이 제시되었으나, 예시된 행위는 모든 시장참가자들에 적용된다.

이 사례들은 해당되는 주요 원칙에 기반한 기본원칙(leading principles)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기본원칙들이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로 표시된 사례들은 지양해야 할 행위를, ☑로 표시된 사례들은 글로벌 규범이 장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동 사례들은 외환시장의 주요 특성들이 진화하는 것에 발맞춰 보완될 예정이다.

글로벌 규범의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참가자들은 아래에 예시된 사례들을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석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올바른 판단하에 윤리적, 전문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거래 실행(Execution)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자격(capacity)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원칙 8)

☑ 한 고객이 시장참가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EUR/NOK를 매수할 것을 부탁한다. 시장참가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시장참가자는 주문을 실행하며 이에 대한 사후 거래실행내역을 공개하고, 수수료를 가격에 더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동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자격 및 수수료 청구에 대한 사항들을 사전에 분명하게 정해놓았다. 특히, 시장참가자는 고객의 주문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권한 내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거래실행의 특징 및 관련 비용 측면에서도 투명하였다.

☑ 한 고객이 시장참가자에게 EUR/NOK를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할 것을 부탁한다. 시장참가자와 고객은 거래주체에 기반한(Principal-based) 관계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장참가자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장부나 시장의 가용 유동성을 이용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동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고객과의 거래조건을 사전에 밝힘으로써 양측의 실행능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장참가자와 고객은 거래주체로 행동하면서 거래를 실행할 것에 동의하였다.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원칙 9, 10)

☑ 은행이 한 펀드 고객으로부터 런던 기준 오후 4시 fix로 EUR/PLN에 대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받는다. 이들이 사전에 동의한 거래조건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주체로서 행동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픽싱 거래를 헤지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의 손실 없이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5분의 픽싱 처리시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하여, 물량 중 일부를 픽싱 처리시간 이전에 헤지한다. 또한 은행은 픽싱 처리 중 고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장부에서 위험 일부를 부담하고 모든 물량을 거래하지 않음으로써 고객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시장참가자들은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고객과 은행은 은행이 거래주체로 행동하도록 합의하였다. 은행은 고객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실행하였다.

☒ 한 시장참가자가 USD/ZAR 매수 주문을 여러 고객들로부터 받았다. 그는 전자주문들이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선착순으로 처리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참가자는 선순위로 들어오지 않은 주문을 먼저 처리한다.

시장참가자는 주문의 처리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주문이 다른 주문들과 합쳐져(aggregated) 처리되는지 또는 시간 우선순위에 따라(time prioritised) 처리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또한 시장참가자는 고객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고객에게 주문처리 절차(order-processing) 방침을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문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방침을 위반하고 있다.

☒ 한 고객이 시장참가자에게 일련의 거래 실행을 전화로 요청하면서, 동 거래는 합의된 대리인 계약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대리인 계약상에는 사전에 협의된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장참가자의 거래실행 부서가 실행하는 모든 거래마다 고지하지 않은 추가적인 스프레드를 부과함에 따라 고객은 사전에 협의된 거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불한다.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참가자는 보수와 수수료를 명시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고객에게 사전에 협의된 보수를 초과하여 부과하였고, 이를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달러 A가 보이스 브로커 B에게 fix로 거래실행할 물량이 많다고 하면서, 달러의 이익에 유리한 가격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B는 이와 비슷한 주문을 가진 달러 C에게 이를 알리고 fix 처리시간 중 또는 이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주문들을 합치는 데 합의한다.

시장참가자는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 거래정보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원칙 19),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1,2). 이 사례에서 고의적으로 벤치마크 픽싱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모한 행위는 윤리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다. 이들은 고객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고, 이것은 외환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비경쟁적 행위이다.

☑ 어느 기업의 재무담당부서(a corporate treasury)가 뉴욕 기준 익일 오전 11시 픽싱으로 GBP/SEK를 대규모 매수하고자 은행에 전화한다. 고객과 은행은 은행이 거래주체(Principal)이며 거래를 헤지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은행은 11시 경 주문을 모두 처리하기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중 GBP/SEK를 소량 단위로 매수한다. 은행은 자신의 장부를 이용하여 고객의 11시 주문을 픽싱 가격으로 완수한다.

시장참가자는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고객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한 고객이 국가 간 인수합병 거래를 위해 시장참가자에게 오후 4시 fix로 50억 USD/JPY 매수를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나 오후 4시가 되기 전, 시장참가자는 자신의 장부에 3억 달러의 USD/JPY를 매수하며, 이는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전략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4시 fix 이후, 시장참가자는 오직 고객 주문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만으로 3억 달러의 USD/JPY를 동 장부에서 매도한다.

시장참가자는 주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얻은 기밀정보는 동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instead) 동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고객 주문과 fixing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부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다.

☑ 은행은 고객의 M&A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통화의 대규모 매도주문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은 이 거래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가능한(potential) 거래실행 전략을 고려하도록 한다. 동 전략은 내부 자금흐름의 일치, 거래 실행 시점, 알고리즘 및 사전헤지의 사용을 포괄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예상되는 주문을 염두에 두어 거래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개선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의 동의하에 주문을 실행한다.

시장참가자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처리할 때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이 사례에 설명된 거래는 대규모로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었고, 관계당사자들은 이러한 주문이 반드시 적절하게 모니터링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시장참가자는 거래주체(Principal)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고객주문을 사전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원칙 11)

☑ 은행이 거래주체로서 행동하고 고객주문을 사전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게 미리 알렸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발생(trigger)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손절매 매수 주문을 받는다. 은행은 시장에 중요한 기술적 수준(at this important technical level)의 비슷한 주문들이 많이 걸려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거래 실행 도중 상당한 체결불이행(slippage)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다. 은행 은 주문의 일부 물량을 사전해지 하기로 결정하고,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의도 없이 사전에 매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촉발(trigger)된 여타 시장참가자들의 매수참여에 따라 손절매 수준 이상으로 시장 가격이 급등한다. 주문이 촉발되었으나 사전해지로 인해 은행은 손절매 수 준과 근접한 거래실행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주체로서 행동하며 고객에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 는 경우에만 고객의 주문을 사전해지 할 수 있다. 손절매 주문은 지정된 가격 (trigger level)을 넘어서는 경우에 조건부로 발동된다. 많은 경우, 체결불이행 (slippage) 위험이 높은 중요한 가격에 손절매 주문이 들어온다. 이 사례에서 은행 은 사전에 자신의 장부를 구축(build up inventory)하기 위하여 사전해지를 이용했 다. 은행은 사전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로써 은행은 체결가격이 주문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고객에게 이득을 주게 된다.

☑ 시장참가자가 거래주체로서 행동하고 고객주문을 사전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렸다. 고객은 일중 유동성이 낮은 시간에 USD/CAD을 대량 매 도하기 위한 가격(bid price)을 시장참가자에게 문의한다. 예상주문량 및 유동성 사정으로 인해, 시장참가자는 IDB 스크린 상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매도 호가(bid)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가를 결정하기 이전, 고객 에게 더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는 IDB를 통해 소량을 매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시험해본다. 시장참가자는 직전에 매도한 거래량과 고객 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총 거래량에 대한 호가를 제시한다.

시장참가자는 거래주체로서 행동하며 고객에게 손실을 야기하지 않는 한에서만 예 상되는 고객의 주문을 사전해지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주문의 일부 를 사전해지 하였는데 그 목적은 예상되는 주문과 관련된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고 객을 위해 사전해지한 물량의 이득까지 고려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원칙 12)

☒ 시장참가자가 USD/MXN을 대량 매도하고자 한다. 그 전에 시장참가자는 가격을 높여 다른 시장참가자들이 USD를 추격매수하도록 하나의 범용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소량의 USD/MXN을 연속적으로 매수한다. 이후 시장참가자는 하나 이상의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원래의 대량매도 주문을 더 높은 가격에 체결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장가격과 깊이(depth,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량) 또는 유동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례는 인위적인 가격변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가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전략을 예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참가자는 대규모 거래를 소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려 하지만, 이 사례에서의 소규모 거래는 인위적인 가격변동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장참가자는 통화를 대량으로 매도하고자 함에도 소규모 매수거래를 통해 시장가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 시장참가자가 USD/MXN을 대량 매도하고자 한다. 그는 하나의 범용 전자거래 플랫폼에 소량으로 매수호가를 높여 연속적으로 입력한다. 또한 시장을 호도할 목적으로 동일한 전자거래플랫폼 상 같은 기관의 또 다른 딜링 코드를 사용하기를 선택함으로써(동 물량들을 매수함으로써) 매수호가를 점차 높여나간다.

이는 앞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는 단 하나의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의 거래자들이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한 고객이 오후 4시 fix에 앞서(higher into) 시장을 움직임으로써 특정 통화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다. 그는 오후 3시 45분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 다량의 픽싱 주문을 넣는다. 이후 그는 은행에 “픽싱 산출시간(fixing calculation window)의 첫 분(minute)에 최대한 많은 양을 매수해 달라”고 지시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생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가격, 시장의 깊이(depth) 및 유동성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전략이 이에 포함된다. 이 사례에서 고객의 주문은 시장가격과 시장의 심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 한 헤지펀드가 유로화 이색 풋옵션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해당 통화는 뉴욕 장중 약세를 보이며 옵션의 knock-in 레벨에 근접해갔다. 아시아 주요 명절로 인해 아시아 장중 유동성이 더 낮을 것임을 알고, 헤지펀드는 이 옵션을 knock-in 시키기 위해 아시아 개장시 knock-in 레벨을 소폭 상회하는 가격에서 은행 A에게 대규모 손절매 매도 주문을 넣는다. 동시에 은행 B에는

knock-in 레벨을 소폭 하회하는 가격으로 동일한 금액만큼의 지정가 매수 주문을 넣는다. 은행 A와 B는 모두 이 헤지펀드의 유로화 이색 풋옵션의 매수 포지션 보유사실을 모르고 있다.

시장참가자는 인위적인 가격변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거래 요청 및 주문 생성을 해서는 안 된다. 위 사례에서, 헤지펀드는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인위적인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주문을 남김으로써 옵션을 knock-in하여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딜러간 중개인이 브로커-딜러, 딜러 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의 지시 없이 가격을 제공한다. 거래자가 동 호가에 거래하고자 할 때 딜러간 중개인은 거래자에게 동 호가는 이미 거래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알린다.

시장참가자들은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및 주문 생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가격, 시장의 심도 및 유동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전략도 이에 포함된다. 위 사례에 예시된 행위는 때때로 “flying a price”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는 유동성이 실제보다 크다는 오해를 의도적으로 불러 일으킨다. 상대방에게 거짓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선, 전자거래,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딜러간 브로커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유형의 시장참가자에게도 부적절하다.

시장참가자는 거래 및 주문과 관련하여 고가 및 저가를 포함한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의 설정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 (원칙 13)

☑ 시장조성자는 고객에게 기준가격의 설정방식을 공개한다. USD/JPY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시장조성자는 자신의 정책과 사전 공개정보에 부합하는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고객의 손절매 거래를 실행한다.

시장참가자는 거래 및 주문과 관련하여 기준가격의 설정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조성자는 고객에게 기준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개하고 있다.

마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칙 14)

☒ 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GBP/USD를 특정 수준에서 손절하여 매도하도록 주문 받는다. 시장가격이 동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은행은 주문량 모두를 체결하지 못하고 일부를 이보다 낮은 가격에서 체결하였다. 하지만 은행은 거래실행 가격에 마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소폭 낮은 가격에 마크업을 취하며 거래를 실행한다.

마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최종 거래가격에 마크업이 포함될 수 있고, 그것이 가격책정 및 특정 수준에서 실행되는 주문거래 실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은행이 한 기업에게 규모, 신용위험, 관계 측면에서 비슷한 타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크업을 부과하여 기업이 은행의 가격책정을 이해하고 문제제기(challenging)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다.

마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 발생 비용, 특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해당 거래 및 광의의 고객관계에 관한 요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 사례에서는 고객을 전문성 수준에 따라 차별하고 있기에, 마크업의 적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각각의 고객에게 상이한 마크업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고객관계(이 경우에는 거래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은행은 고객관계의 차이, 예를 들어 고객마다 거래규모가 상이함을 근거로 규모와 신용상태가 비슷한 기업들에게도 각각 다른 마크업을 적용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거래 불일치(trade discrepancies)를 발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 15)

☒ 헤지펀드가 거래담당 딜러를 통해 프라임 브로커(PB)와 양도(Give-Up) 거래를 하였다. 헤지펀드가 PB에게 제공한 거래조건은 딜러가 제공한 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다. PB로부터 거래 세부내용 불일치를 고지받은 헤지펀드는 그 거래담당 딜러가 실수를 했으며, PB가 동 딜러와 함께 그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참가자는 불일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프라임 브로커의 고객과 거래담당 딜러는 시의적절한 수정을 위해 거래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거래조건을 대조해 볼 책임이 있다. 이 사례에서 헤지펀드는 프라임 브로커에게 불일치 해결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헤지펀드가 딜러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헤지펀드와 실행 딜러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고객이 프라임 브로커 명의로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한 FX거래를 실행한다. 전자거래플랫폼의 규칙에 따르면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상대편)거래담당 딜러의 이름이 고객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전자거래플랫폼은 고객 기록과 다른 가격의 거래를 확인시킨다. 전자거래플랫폼과 프라임 브로커는 거래 불일치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협조한다. 특히 전자거래플랫폼은 고객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담당 딜러와 연락을 취한다.

시장참가자는 거래 불일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고, 원칙 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시장 접근의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access provider)가 거래 불일치의 해결을 도와야 한다. 이 사례에서 고객

과 실행 딜러는 거래 불일치를 해결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을 서로 알 수 없으므로 프라임 브로커 및 전자거래플랫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참가자들은 라스트룩(last look)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해야 하며 적절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칙 17)

☒ 전자거래플랫폼에서 EUR/USD의 표시된 가격이 12/13인 가운데 시장참가자가 익명의 유동성 공급자에게 13의 가격에 100만을 매수하는 거래를 요청하였다. 동 거래 요청과 관련하여 유동성 공급자 측의 승인 및 확정 이전에 라스트룩 윈도우(last look window)가 주어진다. 이 기간 중 유동성 공급자는 13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수 주문을 낸다. 이 매수 주문이 전량 처리되면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요청을 확정하고 실행하지만 동 주문이 전량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참가자의 거래 요청도 전량 처리되지 않는다.

시장참가자는 타당성과 가격 등의 요인들을 검증하는 위험 통제 수단으로만 라스트룩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이익실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요청 정보를 오용하고 있으며 이익이 없다면 이 거래를 전량 처리할 의도가 없다.

☑ 고객이 라스트룩 윈도우가 수반되는 거래를 요청하였으며, 유동성 공급자는 라스트룩의 사용목적에 이미 밝혔다. 고객은 거래의 평균 체결비율(average fill ratio)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한다. 제공된 데이터상 평균 체결비율이 예상을 하회하므로 고객은 유동성 공급자와 이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라스트룩을 이용하는 시장참가자는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해야 하며,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문 처리 과정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 또한 모범적인 관행이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의 투명성으로 인해 고객은 주문처리 과정에 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양측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 거래 또는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장참가자들은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칙 18)

☒ 한 통합관리자는 브로커 수수료를 리베이트해 주는 전자거래플랫폼으로의 주문 전송을 선호한다. 통합관리 제공자는 브로커 수수료 리베이트가 주문전송처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다.

고객에게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참가자는 주문전송처 선호 결정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 사례에서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전송처 선호 결정요인을 밝히지 않았다.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시장참가자는 기밀정보를 식별하고 보호해야 한다 (원칙 19와 20)

자산운용자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ABC 은행이 방금 저에게 EUR/SEK 매수 의사(axe)를 보이며 전화했어요. 당신도 매수할 생각이 있나요?

시장참가자는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고객의 매매 의사 (axe) 또는 거래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괄한다. 동 사례에서 자산운용자는 다른 은행의 매매의사, 즉 기밀정보를 공개 및 요청하였다.

아래 사례에서는 자산운용자가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ABC 은행이 자산운용자에게 : 우리는 EUR/SEK 현물 매매 의사가 있습니다. 당신도 관심이 있습니까?
자산관리사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EUR/SEK에 관심이 없습니다.

헤지펀드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 당신은 파운드화 롱 포지션인가요?

시장참가자들은 타당한 근거 없이 현재 포지션이나 거래활동과 같은 기밀정보를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헤지펀드가 특정 포지션이 아닌 시장 견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 파운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이 은행에게 1.5억 USD/MXN에 대한 호가를 문의한다. 이 은행은 해당 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을 하지 않는다. 동 은행의 시장조성자가 다른 은행의 시장조성자에게 전화한다 : 1.5억 USD/MXN에 대한 양방향 호가를 문의 받았습니디. 제가 호가 스프레드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당신의 USD/MXN 가격책정 기준(pricing matrix)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장참가자는 고객의 거래활동에 대한 정보 등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된다. 동 사례에서 은행 시장조성자는 기밀 정보인 고객의 이해관계와 타 기관 고유의 스프레드 책정 기준 정보를 공개 및 요청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은행이 그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요청한다.

고객이 은행에게 1.5억 USD/MXN에 대한 호가를 문의한다. 이 은행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은행의 시장조성자는 다른 은행 시장 조성자에게 전화한다 : 1.5억 USD/MXN에 대한 양방향 호가를 줄 수 있습니까?

☒ 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공개되기 전까지 FX 리서치 부서의 거래 추천을 기밀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해 왔다. 은행의 FX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헤지펀드에게 : 우리의 USD/JPY에 대한 견해를 새로운 기준금리 전망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오늘 중 새로운 매수추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참가자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동 사례에서 애널리스트는 지정기밀 정보인 거래추천을, 발표 이전에 외부에 공개하였다. 아래 사례의 경우 FX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발표 이후에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 은행 FX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헤지 펀드에게 : 우리가 1시간 전에 발표한 새로운 기준금리 전망과 USD/JPY 매수 추천을 당신이 받아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 헤지펀드 매니저가 대형 고객의 포트폴리오 리뷰회의에 참여한다. 회의에서 매니저는 고객이 통화 구성 중 일부를 곧 다른 통화로 변경할 예정임을 알게 된다. 매니저는 조언을 요청받았으나 자산위탁을 할당받지는 못하였다. 회의를 떠나면서 매니저는 자신의 거래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곧 발생할 거래에 대해 알린다.

시장참가자는 기밀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타당한 근거를 가진 자 외에는 기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동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 사례에서, 통화구성의 재조정 계획은 기밀정보이며, 이는 오직 헤지펀드 매니저의 조언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거래담당 부서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한 펀드가 은행에게 픽싱을 위한 대규모 EUR/PLN 매수 주문을 요청한다. 전화가 끝난 즉시 은행은 다른 헤지펀드 고객에게 연락하여 “나는 픽싱 이전에 처리할 EUR/PLN의 대규모 매수주문이 있다. 이로 인해 20분 이후 시장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며, 당신의 주문도 어느 정도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다(I can work some flow for you).”라고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고객 거래활동은 기밀 정보이므로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참가자들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원칙 21)

☒ 한 자산운용 매니저는 세 은행에 전화를 걸어 “5천만 GBP/USD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제 최대 금액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자산운용 매니저는 세 은행으로부터 각 5천만 파운드 씩 총 1억5천만 파운드를 매수한다.

시장참가자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자산운용 매니저는 더 나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은행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은행들로부터 최대금액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면 자산운용 매니저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Sell-side 기관이 대량 매도할 저유동성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의 트레이더는 이 통화의 대량 매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여러 명의 시장참가자들과 접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장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트레이더는 시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의사소통했다.

시장참가자는 시장분위기(Market Colour)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원칙 22)

☑ 한 기업 고객이 엔화에 대한 24시간 내 지정가격 매매의사(call level)를 남긴 가운데 엔화가 지정 가격을 돌파하였다. 은행 영업직원이 기업 고객에게 : 엔화가 당신이 지정한 지정가격 수준을 넘겨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15분동안 200틱 하락했으며 다양한 참가자의 대규모 매도세와 함께 호가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가매수에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움직임은 엔화에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촉발요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는 지진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다만 주요 뉴스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분위기에 대해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영업직원은 시장 변화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충분히 종합된 거래량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제3자로부터의 정보출처를 명확히 하였다.

☒ 은행 영업직원이 헤지펀드에게 : 우리는 오늘 아침 XYZ(특정 고객의 별칭)로부터 대규모 NZD/USD 매수 수요를 보았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량 정보를 익명성에 기반하여 총액 기준으로만 공유함으로써 시장분위기에 대해 적절히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동 사례에서 은행 세일즈는 특정 고객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고객 분류에 따른 총액 정보로 의사소통함으로써 고객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다.

☑ 은행 영업직원이 헤지펀드에게 : 우리는 오늘 아침 리얼머니(Real Money names)의 대규모 NZD/USD 매수 수요를 보았습니다.

☒ 자산운용 매니저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 저는 당신이 GBP/USD 대규모 매수자라고 들었습니다. 이 물량이 이전과 같은 영국 기업 물량이었나요?

시장참가자들은 특정고객의 거래활동을 포함한 기밀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시

장분위기는 특정고객의 거래가 파악되지 않도록 익명성과 총액 기준에 기반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자산운용 매니저는 기밀정보를 요청하였다. 반면 아래의 사례에서는 자산운용 매니저가 일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요청한다.

- ☑ 자산운용 매니저가 은행 시장조성자에게 : 지난 한시간 동안 GBP/USD가 100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나요?
- ☒ 시장조성자가 헤지펀드에게 : 엔화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자동차회사에게 1억 USD/JPY 매도분을 커버하는데 지금 15틱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시장참가자들은 거래량 정보를 익명성에 기반하여 총액 기준으로만 공유함으로써 시장분위기에 대해 적절히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최근의 특정 거래를 언급함으로써 특정 고객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아래의 사례에서는 거래실행 시기를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고객 유형을 일반화하고 있다.

- ☑ 시장조성자가 헤지펀드에게 : 엔화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난주 1억 USD/JPY 거래비용이 3틱에 불과하였으나 오늘은 15틱으로 거래하였고 시간도 두 배 소요되었습니다.

시장참가자들은 승인된 의사소통 방식과 경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칙 23)

- ☒ 한 영업직원은 고객에게 확정(confirm)해야 할 주문이 많았으나 일찍 퇴근했다. 그 직원은 기록이 남는 공식 통신라인에 접근할 수가 없어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 핸드폰을 통해 고객에게 확정내용을 문자 송부하였다.

의사소통 경로는 특히 거래를 할 경우 공식 기록이 남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영업직원은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경로로 거래를 확정했다. 반면 아래 사례에서는 영업직원이 공식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 한 영업직원은 고객에게 확정해야 할 주문이 많았으나 일찍 퇴근했다. 공식 기록이 남는 통신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직원은 대신 사무실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공식 기록이 남는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확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위험 관리 및 준법감시(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거래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제한하고 모니터링하며 통제하는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 27)

☒ 한 은행 고객은 은행의 세일즈/트레이딩 부서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외환시장 유동성에 접근하고 있으며 다른 유동성 원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고객은 단 하나의 유동성 원천에만 의존함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의 발생에 대응하여 은행은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동성의 양을 조정하였으며 이는 고객의 외환 포지션 관리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고객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상수단(보이스 세일즈/트레이딩 업체와의 관계 포함)이 없으므로 거래 역량이 크게 약화된다.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제한하고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시장참가자들은 단일 유동성 원천에 의존함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고객은 단일 유동성 원천에 의존함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상 업무지속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외환 포지션 관리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 한 시장참가자는 중요한 고객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외환 프라임 브로커 및 여러 쌍방계약 등 다수의 유동성 접근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을 위해 X는 거래 대부분을 하나의 프라임 브로커와 진행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 중 일부 작지만 대표성을 지닌 물량은 다른 프라임 브로커 및 계약을 맺은 파트너에게 맡긴다.

시장참가자들은 단일 유동성 원천에 의존함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비상업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적절한 여러 유동성 원천을 유지하고 활용하였다.

☒ 소규모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자기자본거래) 펀드는 한도를 신중히 지키기 위해 순 오픈 포지션(Net Open Position, NOP) 및 일별 결제 한도(Daily Settlement Limits, DSL) 등 프라임 브로커의 위험 확인과정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펀드의 거래 알고리즘은 통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버그를 가지고 있어 시스템적으로 손실을 야기하고 있었다. 동 펀드는 위험 한도 확인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존립을 위협하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지한다.

시장참가자들은 FX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제한하고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관행을 갖추어야 한다. 동 사례에서 트레이딩 펀드는 운영위험을 식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한도 확인과정은 펀드에 포지션 가치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데 실패했다. 극단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도 포지션 가치의 감소로 인해 순 오픈포지션(NOP) 및 일별 결제한도(DSL)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업무지속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 33)

☒ 한 시장참가자는 백업 장소를 주 장소와 같은 지역에 두었으며 주 장소에 있는 직원에만 의존한다. 이 시장참가자는 업무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알맞은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참가자는 같은 통신경로를 공유하는 주 장소와 백업 장소 모두 접근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필수 직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시장참가자는 업무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알맞은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주 장소와 백업 장소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는 혼란과 연락두절 등에 대응하는 견고한 업무지속계획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래의 두 사례에서 시장참가자는 업무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에 알맞은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하였다.

☑ 시장참가자는 백업 장소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선택하고 그 지역의 직원들이 백업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장참가자는 백업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데이터 센터가 이 용불가능해질 경우 신뢰하는 시장조성자에게 전화하여 포지션을 축소, 청산하고 데이터 센터가 재개될 때까지 전화로만 거래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참가자들은 모든 당사자의 위험 축소를 위해 그들의 시장활동 프로파일과 부합하도록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거래승인 및 신용제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 41)

☒ 프라임 브로커리지 고객은 PB 계약 하에서 각각의 거래실행 딜러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를 부여받았다. 고객은 거래실행 딜러가 한도를 모니터링한다고 생각하여 내부 절차에 거래 전 준법감시 확인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고객은 여러 계좌를 대신하여 하나의 대규모 거래를 실행하였으며 거래 이후 이를 한 거래실행 딜러의 PB 계좌에 배분하였다. 고객은 거래실행 딜러와의 PB 익스포져 한도를 위반했으며 거래실행 딜러가 배분내역을 확인시킨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고객들은 PB 계약에 명시된 가용한도를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거래실행 딜러가 대량(bulk) 거래시 정확한 배분내역을 모를 경우 특히 중요하다. 고객들은 딜러에게 지정한도 내의 거래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사전 준법감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거래실행 브로커는 정례적이고 내재된 통제장치를 통해 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허가 한도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고객에게 경고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참가자들은 신용제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동 사례는 허가 한도를 위반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거래실행 브로커가 위험 통제에 있어 적절한 모니터링

을 행사함으로써 반복적인 한도 위반을 감지하고 관계당사자들과 정보공유를 적절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거래확인 및 결제(Confirmation and Settlement)

시장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거래를 확정하여야 한다. (원칙 46)

☑ 한 고객은 단일은행 플랫폼 상에서 USD/JPY 현물환을 거래하였으며 플랫폼을 통해 즉시 거래 확인서를 받았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이후 고객은 즉시 거래 확인 메시지를 은행에 송부할 수 있었다

시장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거래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일관처리(straight-through-processing) 및 거래확정 절차 개시에 힘입어 고객이 해당 거래확정 메시지를 단시간 내에 송부할 수 있었다.

☑ 로컬 시장참가자는 전화로 모회사와 FX거래를 실행한다. 모회사 및 로컬 시장참가자 모두 공동의 보안 전자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직접 확정한다.

시장참가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거래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양측 모두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 공동의 보안 전자플랫폼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시장 전반에 걸친 거래 자동확인 매칭시스템의 대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대량거래(block transactions)를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원칙 47)

☒ 회사의 재무담당자는 아침에 회의로 매우 바쁘다. 그녀는 총 10건의 거래실행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거래는 연금펀드 배분을 포함하는 대량거래이다. 재무담당자는 한 거래상대방과 통화하여 모든 거래를 실행하고 점심 식사 후 시스템에 동 거래를 한꺼번에 입력하였다.

대량거래 세부내역은 거래실행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거래실행과 시스템 입력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거래확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부록 2(Annex 2): 용어 해설(Glossary of Terms)

대리인(Agent) :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실행하나 주문과 관련된 시장위험은 지지 않는 시장참가자

적용법규(Applicable Law) : 각각의 시장참가자와 그들이 속한 관할지역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제

매매의도(Axe) : 시장참가자가 특정 상품이나 통화의 매매를 위해 현재 시장가보다 더 나은 조건의 거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고객(Client) : 여타 시장참가자들을 통해 거래를 요청하는 시장참가자. 시장참가자는 경우에 따라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시장조성자가 될 수도 있음

준법감시 위험(Compliance risk) : 외환시장에서 허용되는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제재를 받거나 나쁜 평판을 얻게 될 위험. 준법감시는 시장의 행동기준 준수 여부, 이해상충의 조정, 공정한 고객 응대,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등을 포함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기밀로서 취급되는 정보로서 FX거래 정보 및 지정기밀정보를 포함

기업재무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 :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그룹내 모기업·자회사·지점·계열사 또는 합작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으로서(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그룹 외부와 거래하는 비금융기업 내부의 시장참가자

기밀지정정보(Designated Confidential Information) : 시장참가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높은 보안수준을 부여받는 정보로서, 명문화된 기밀유지 협약을 통해 공식화될 수 있음

직접 지급(Direct Payment) : FX거래의 결제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

전자거래 플랫폼(E-Trading Platform) : 시장참가자들이 외환시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전자거래 활동(Electronic Trading Activities) : 전자거래 플랫폼의 운영, 전자거래 플랫폼에서의 가격 제시나 접수, 전자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알고리즘의 제공이나 사용 등

FX : 외국환(Foreign Exchange)

외환시장(FX Market) : 기관간(wholesale) 외환시장

FX거래정보(FX Trading Information) : 시장참가자 자신 또는 고객의 과거, 현재, 미래의 FX거래 활동 및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 또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입수된 기타 관련 정보

FXC : 외환시장협의회(Foreign Exchange Committee)

픽싱 주문(Fixing Order) : 특정 픽싱 환율로 거래하는 주문

기브업(Give-UP) : 프라임 브로커 고객과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프라임 브로커가 지정한 당사자로부터 또 다른 프라임 브로커에게 거래가 양도되는 절차

글로벌 규범(Global Code) : 외환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관행에 관한 글로벌 원칙

딜러간 브로커(Interdealer Broker; IDB) : 브로커-딜러(broker-dealers), 딜러 은행(dealer banks) 및 기타 금융기관 등 개인이 아닌 기관 사이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중개기관. 보이스 및 전자 브로커, 또는 혼합형 브로커(hybrid voice-electronic brokers)를 모두 포함. 어떤 정도로든 전자거래를 하는 브로커는 전자거래 플랫폼의 범주에 속함

마크업(Mark Up) : 시장참가자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의 최종가격에 포함되는 스프레드 또는 비용(Charge). 이는 위험감수, 발생비용,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반영

시장분위기(Market Colour) :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기초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의견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 현재의 가용한 수준에서 시장참가자가 외환상품을 매매하도록 의뢰하는 거래상대방의 주문

시장참가자(Market Participant) : 서문에 정의

개인 거래(Personal Dealing) : 직원이 본인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의 이익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수행하는 거래

사전헤지(Pre-Hedging)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객 주문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로 동 주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PB) : 사전에 협의된 조건하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거래당사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기관. 프라임 브로커들은 이와 함께 운영 및 기술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프라임 브로커리지 참가자(Prime Brokerage Participant) : (i) 프라임 브로커이거나, (ii) 프라임 브로커의 고객이거나, (iii) 프라임 브로커와 고객 사이에서 활동하는

거래실행 딜러(executing dealer) 또는 거래실행 중개기관(execution intermediary)

거래주체(Principal) :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시장참가자

실시간(real time) :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제 시간, 또는 매우 가까운 시간

결제위험(settlement risk) : 상대방의 결제 실패로 인해 거래 총금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될 위험. 매도통화에 대한 지불은 완료되었으나 매수통화를 수취하는데 실패할 때 발생한다.(결제위험은 “Herstatt Risk”라고도 불린다)

상용결제지시(SSI) : Standing Settlement Instruction의 약자

기준(Standards) : 시장참가자의 내부 규칙, FX 글로벌 코드 또는 각 지역 FXC의 자체 규범 등과 같은 외부 규범, BIS, FSB와 같은 공적 국제기구들에 의한 가이드라인 등

손절매 주문(Stop Loss Orders) : 기준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설 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주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기준가격, 효력 발생 조건(trigger), 주문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손절매 주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 주문수량, 주문시간, 트리거(trigger) 등 여러 파라미터들이 완전히 정의되어야 함

제3자 지급(Third-party Payment) : FX거래의 결제시 거래상대방의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보이스 브로커(Voice Broker) : 양쪽 거래상대방들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딜러간 브로커. 거래참가자들은 전화나 대화시스템, 또는 기타 혼합 수단을 통해 협상함

부록 3(Annex 3) : 이행선언서(Statement of Commitment)

외환시장 글로벌 규범 이행선언서

[기관명](이하 “상기 기관”)은 외환시장 글로벌 규범(이하 “글로벌 규범”)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글로벌 규범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시장관행으로 알려진 일련의 원칙들을 기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상기 기관은 글로벌 규범에서 정의한 시장참가자임을 확인하며 글로벌 규범의 원칙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외환 활동의 규모와 속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기 기관은 글로벌 규범에 일치하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규범 이행선언서에 대한 부연설명

글로벌 규범 (이하 “규범”)은 은행간 외환시장 (이하 “외환시장”)에서 바람직하다고 국제적으로 여겨지는 관행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본 규범의 목적은 시장을 보다 견고하고, 공정하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쌓고 유지하며, 이로써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규범 이행선언서(이하 “선언서”)는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규범에 제시된 바람직한 관행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의사를 나타낼 공통의 기초(common basis)를 제공해준다.

1. 선언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혜택이 있나?

선언서는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시장기능의 강화 등 규범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 선언서는 (i) 시장참가자들이 규범을 도입하고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할 수 있고, (ii) 시장참가자들의 운영 및 준법 감시 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규범과 마찬가지로 선언서 역시 자발적인 것이며, 시장참가자들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 참가자들은 선언서를 웹사이트에 공표하는 등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 및 거래상대방 등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양자간으로도(bilaterally)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외환시장협의회(FXCs)의 회원자격 요건과 결부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선언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주요 장점으로서는 규범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규범의 목적을 친경쟁적인(pro-competitive) 방법으로 고취하는 데 있다. 선언서의 사용과

공개는 고객, 거래상대방 및 시장 전반에 해당 시장참가자가 바람직한 관행을 따른다는 긍정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선언서의 광범위한 사용은 외환시장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관행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돕는 규범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의 규범에 대한 지지와 규범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2. 선언서 사용이 갖는 의미는?

선언서는 해당 시장참가자가:

- (i)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규범을 지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외환시장의 바람직한 관행에 대한 원칙의 모음으로 여기고 있고,
- (ii)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며
- (iii) 활동의 복잡함과 규모 및 외환시장 참여의 성격을 고려하는 가운데 영업활동을 규범의 원칙에 합치시키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쳤음을 의미한다.

규범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각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이행선언서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시장참가자들은 외환시장 활동의 규모,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규범의 서문에 언급되었듯이, 외환시장은 다양한 외환상품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는 광범위한 시장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범 및 선언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각 시장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밟는 절차는 각 기관의 규모 및 외환시장 활동의 복잡성, 외환시장 활동의 성격, 그리고 적용법규를 반영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어떤 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해질 것인가는 적절한 내부 평가를 거쳐 각 시장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부 시장참가자들의 경우 적절한 절차는 기존 관행과 규범과의 부합 여부 검토, 선언서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규, 절차 및 통제장치의 수립 및 유지 등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시장참가자들은 고위 경영진의 적절한 감독 수준에 대한 검토, 직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4. 시장참가자들은 어떻게 기업 구조를 고려하여야 하나?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결정할 사항이다. 이행선언서는 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레벨의 단일 선언서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개별 계열사들이 각각의 선언서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다.

5. 선언서를 활용하기에 앞서 시장참가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시장참가자들은 선언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와 승인절차가 적절할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시장참가자마다 다를 것이나 대체적으로 선언서 활용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는 시장참가자의 외환시장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선언서에 기술된 종류의 성명을 발표할 권한이 있는 인사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장참가자의 내규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6. 시장참가자는 언제부터 선언서를 활용하기 시작해야 하는가?

상기한 바와 같이, 시장참가자들은 선언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한 절차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각 시장참가자의 현재 행과, 기관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범위한 시장참가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선언서의 활용을 준비하는 데 6~12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얼마나 자주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선언서를 재검토하고 갱신해야 하는가?

시장참가자의 사업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언서를 활용하는 시장참가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규범의 원칙들과 일치하는지를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각 시장참가자의 규모와 외환시장 활동의 복잡성 및 성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어떤 시장참가자들은 정기적인 재검토 일정을 선호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시장참가자들은 사업 성격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향후 규범은 최신 이슈, 외환시장의 변화, 시장참가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될 예정이다. 향후 규범의 개정안이 공표될 때 이에 맞추어, 시장참가자들은 이러한 개정의 취지 및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선언서를 갱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